

의정부지방법원 2023. 9. 5 선고 2022가단13241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여울(담당변호사 장기윤)

피 고 1. A

2. B

3. C

변 론 종 결 2023. 8. 8.

판 결 선 고 2023. 9. 5.

주 문

1. 피고들과 D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2. 22.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D에게, 피고 A는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의 2/4 지분, 피고 B, C은 각각 1/4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2022. 2. 22. 접수 제2363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D는 'E'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였고, 원고는 2018. 7. 24. D의 F에 대한 대출금 지급채무의 신용보증을 하였다.

나. D는 2022. 1. 21.경 F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이자를 연체하였고, F은 2022. 3. 16. 원고에게 연체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22. 4. 19. F에 D의 대출금 채무 원리금 합계 51,668,073원을 대위변제 하였다.

라. D는 2022. 2. 22.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사건 부동산')을 가족(피고 A는 배우자, 피고 B, C은 자녀로 보인다)인 피고들에게 증여하였다. 같은 날 피고 A는 사건 부동산의 2/4 지분, 피고 B, C은 각각 1/4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2022. 2. 22. 접수 제2363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2022. 2. 22.을 기준으로 D의 적극재산 평가 합계액은 1,222,220,800원이고, 소극재산 합계액은 1,333,620,076원이다.

2. 사해행위의 성립

가. 피보전채권

D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는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D는 원고에 대하여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D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D는 피고들에 대한 사건 부동산 증여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D가 채권자들의 책임재산인 사건 부동산을 가족인 피고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다른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

다. 피고들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들이 D에 대한 사업소득 또는 임금채권이 있었으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설령 피고들의 D에 대한 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D와 피고들의 관계에 비추어 D가 피고들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주장은 의심스럽고,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로는 피고들의 채권에 관한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피고들은, D의 신용보증사고를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데, 이를 피고들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으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D에게 사해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들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피고들이 선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D가 피고들과 체결한 사건 부동산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 A는 사건 부동산의 2/4 지분, 피고 B, C은 각각 1/4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2022. 2. 22. 접수 제2363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조종현

별지

부동산의 표시

대구광역시 수성구 G 입야 9719㎡

중 공유자 지분 4분의 2 A

지분 4분의 1 B

지분 4분의 1 C

- 이 상 -

